

학습자료 (청탁금지법)

1차시. 청탁금지법의 이해(1, 2)

*속지주의

- 대한민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

*청탁금지법

-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(청탁금지법 제5장 징계 및 벌칙 참조).
-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14가지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와 지위·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(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참조)
-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). 그리고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의 대상입니다.
- 부정청탁의 예외중 하나로서 단순한 선처 또는 편의를 부탁하는 경우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

*사교목적의 선물

- 사교목적 선물의 경우는 5만원이 상한이다(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, 별표 참조)
- 단,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이 상한이다.

*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

- 위 경우 직무관련성은 요하지 않으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(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1항 참조).

*직무관련성의 유무

-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로 인한 범죄의 성립요건과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의 수수금지로 인한 위반행위 성립요건

*청탁금지법 상 신고자등의 보상금 지급신청 시한

- 수입의 회복 등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

*공직자 등별 사례금 상한액

- 상한은 40만원.(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)
(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)
-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= 상한액 100만원

*양벌규정(청탁금지법 제24조)

-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, 임직원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